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18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이해민
윤종오 · 박은정 · 김준형
김선민 · 백선희 · 한창민
서왕진 · 신장식 · 모경중
김동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 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

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재”를 “화재(「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u>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u> 3. ~ 6. (생략)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u>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u> 2. ~ 6. (생략) ②·③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화재(「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3.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 ----- ----- ----- ----- ----- -----. <u><삭 제></u>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